

# 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모든 시설에서 간접 흡연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.



## 제1종 시설

대상 시설 ▶ 학교, 병원, 약국, 아동복지시설, 행정기관의 청사 등



**원칙 : 부지 내 금연\***



※예외로서 야외에서의 특정 야외 흡연 장소를 설치 가능.

설치에 필요한 조치 : ① 흡연 장소를 구획 ② 흡연 장소라는 점을 표시 ③ 이용자가 통상 출입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

## 제2종 시설

대상 시설 ▶ 음식점, 사무소, 공장, 호텔 등 (제1종 시설과 흡연 목적 시설\* 이외)

※흡연을 주목적으로 하는 바·스낵, 매장에서 흡연 가능한 담배 판매점 등



**원칙: 실내 금연**

종업원만 이용하는  
백야드 등도 포함

예외로서, 기준을 충족한 흡연실의 설치·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경과 조치 (2020년 4월 1일 시점에 영업하고 있을 것 등이 조건)가 인정되고 있습니다.



### 흡연실 설치의 기술적 기준

- 출입구에 있어서, 실외에서 실내로 유입되는 공기의 기류가 매초 0.2m 이상
- 담배 연기가 실내에서 실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벽, 천장 등으로 구획되어 있음
- 담배 연기가 실외 또는 외부 장소에 배기되고 있음

연기가 유출되지 않도록 구획

연기가 야외로 배출



출입구의 공기의 흐름  
매초 0.2m 이상

### 흡연실의 종류

- 흡연 전용실 : 취식 불가.
- 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 : 취식 가능.

### 경과 조치의 대상이 되는 음식점의 요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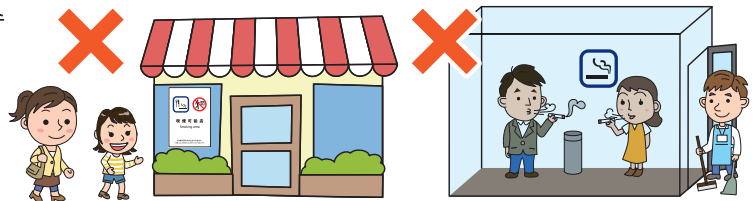
상세 사항은 요코하마시 홈페이지(PDF)를 확인해 주십시오.  
요코하마시에 신고서 제출(일본어 대응)이 필요합니다.



**20세 미만은 흡연 구역에 출입 금지**

20세 미만인 분은 종업원인 경우에도 흡연 구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. "흡연 가능점\*"인 경우, 20세 미만의 손님 입장할 수 없습니다.

※경과 조치를 받은 소규모 음식점 중 매장 내 전부에서 흡연 가능한 매장



**표식 게시**

흡연 관련 표식을 시설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장소 및 흡연실 출입구에 반드시 게시해 주십시오.

< 금연 시설 출입구 >



< 흡연할 수 있는 시설의 출입구 > 예



소규모 음식점만  
(레이와 2년(2020년) 4월  
1일 시점에 영업하고 있을  
것 등의 조건 있음)



상세 사항은  
요코하마시  
홈페이지(PDF)를  
확인해 주십시오.



※가나가와현 조례에 의거한 표식

# ! 건강증진법에는 배려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.

## ● 야외에 흡연 장소를 설치할 때의 배려 **시설 관리자의 배려 의무**

야외에 흡연 장소를 설치하는 경우, 설치관리자는 **원치 않는 간접 흡연을 발생시키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습니다.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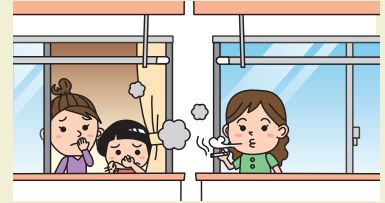
**예** 사람의 왕래가 많은 보도 부근이나 매장의 출입구 부근, 이용자가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는다.



## ● 야외나 자택 등에서 흡연할 때의 배려 **흡연자의 배려 의무**

야외나 주거, 베란다 등에서 흡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, 흡연자는 **원치 않는 간접흡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상황에 배려할 의무가 있습니다.**

**예**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에서는 피우지 않는다. 아이 근처에서는 피우지 않는다. 베란다에서 흡연하지 않는다.



# ! 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책무



● 흡연 금지 장소에 재떨이 등 흡연 기구나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다.

●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, 흡연할 수 있는 장소의 출입구 및 시설의 주요 출입구에 흡연 장소를 나타내는 표식을 게시한다.(금연의 경우에도 표시※)  
※가나가와현 조례에 의거한 의무

●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, 흡연실의 구조나 설비를 담배 연기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하게 한다.

● 흡연 가능한 장소에 20세 미만인 자(종업원 포함)를 출입시키지 않는다.

● 흡연 금지 장소에서 흡연하고 있거나 흡연하려는 자에 대해 흡연 중지 또는 흡연 금지 장소에서의 퇴출을 요구한다.

### 의무

! **벌칙 있음 :**  
50만 엔 이하의 과태료

### 의무

! **벌칙 있음 :**  
5만 엔 이하의 과태료  
가나가와현 조례에 의거한 벌칙  
※종업원의 출입은 제외

### 노력 의무

## ● 기타 흡연에 관한 규칙 및 가이드라인

후생노동성  
"직장에서의 간접 흡연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"

상세 사항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.

<https://www.mhlw.go.jp/content/000524718.pdf> 일본어 대응



요코하마시 빈 캔 따위와  
담배꽂초등, 산란방지에 관한 조례  
(무단투기, 꺾연금지 조례)

상세 사항은 요코하마시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.

<https://www.city.yokohama.lg.jp/kurashi/sumai-kurashi/gomi-recycle/seiketsu/bika/torikumi-ko.html>



[ 요코하마시의 건강증진법 및 간접 흡연 방지에 관한 문의처 ]

요코하마시건강 복지국 건강 추진과

☎045-671-2454 일본어 대응

접수시간 : 평일 8시 45분 ~ 17시 15분(공휴일 제외)

요코하마시의 간접 흡연 방지  
대책에 대한 상세 사항은  
홈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.



일본어 대응